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2. 4 선고 2024가단827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4.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23. 2. 21.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23. 7. 20. 접수 제45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3. 2. 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는 2023. 7. 17.자로 작성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일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2023. 2. 21.로 한다)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23. 7. 20. 접수 제451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별지